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 공고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주간단위 거래상황 기록부의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보고방법 중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1. 목적

- 거래상황기록부의 보고방법 중 전산보고 방식으로 보고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개요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시행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운영기간 : '20. 2. 14. ~ 12. 31.
*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POS, ERP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전산보고를 위한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주유소 및 면지역 소재 일반판매소(약 300업소)
- 대상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된 업소

3. 지원 내용

-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전산보고 체계 구축 지원
 - POS 등 전산장치*로부터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생성·전송할 수 있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최대 40만원/업소 지원(부가세 별도)
 - *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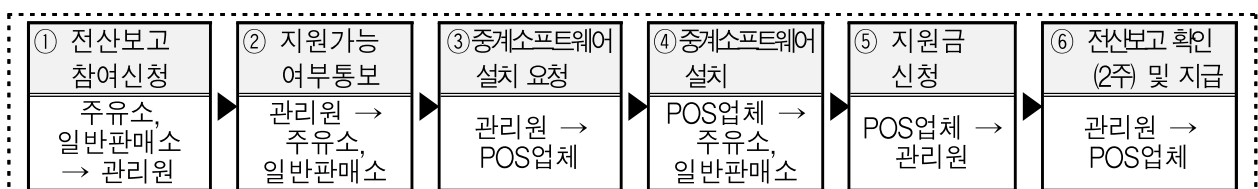
4. 신청자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으로 등록(신고)된 자
 - POS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로 전산 보고가 가능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 * 법령 개정('17.7.1시행)에 따라 주유소와 거래하고자 하는 면지역 소재 일반판매소
 - 단,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등으로 '20년 전산보고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신규 신청하고 중계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보고의무기간(2년) 경과 후 다른 보고방법으로 변경한 주유소 중 다시 전산보고를 하기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 주유소

5. 신청 및 지원 절차

- (참여신청)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함께 관련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
 - 정유사 및 대리점 직영, 농협 주유소 및 농협 일반판매소, 법인 등은 본사에서 일괄신청 가능
 - 관리원에서 신청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주유소 등에 통보
-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사용 중인 POS의 납품업체 또는 현재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 (전산보고) 중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주 전산보고 수행
 - 설치 후 2주 이상 전산보고를 정상적으로 수행 확인(점수절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POS업체에서 관리원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별지서식 3호)을 하고 관리원은 신청 업소의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점수) 후 지원금을 POS업체에 지급

<전산보고 지원사업 절차>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14.(공고일) ~ 12. 31.

*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 종료

-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선착순)으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며,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www.oilreport.or.kr)
- FAX : 070-4850-8255
- 우편 : (우) 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 신청(제출) 서류(별지서식 1호, 2호)

-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주유소, 일반판매소 의무사항 이행각서

7.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의무이행 사항

□ 지원사업 참여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2년간 전산보고 방식을 유지하여야 함

- 설치업체는 설치 후 1년간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지원
-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보고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전산보고 지원사업 재참여 시 설치비용은 사업자 부담

8. 문의처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 1577-7055)

- <별지서식>
1.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3.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제 2020 - 호 (석유관리원이 작성)

지원구분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업태 주유소, 일반판매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보고담당자	성 명:
	유 선:		유 선:
	휴대폰:		휴대폰:

POS 사용 현황 (POS 업체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

구분	내용
①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휴대폰), POS 사용현황
②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전산보고 지원사업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 자격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 시 지원금 지급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_____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이하 '참여대상 사업자')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로부터 중계소프트웨어 (이하 '미들웨어') 설치(비용)를 지원받으며, 참여대상 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이행각서 (이하 '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전산보고 참여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받는 참여대상 사업자의 사후관리(의무이행 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참여대상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미들웨어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허위설치 금지)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게 부적정한 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설치 확인협조)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후 설치내역에 대한 세부설명 및 자료제공 등 관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 사항)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참여대상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전산보고를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2년 이내 타 보고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 사업 재참여 시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승계자에게 전산보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3. 중계소프트웨어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원의 지도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라이선스 회수) 참여대상 사업자 또는 승계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관리원은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 지원한 중계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각서의 유효기간은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날(관리원에서 설치 확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금 지급요청서

접수번호		제 2020 - 호 (석유관리원이 작성)		
청구자 (설치업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원석유사업자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입금통장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위 석유사업자의 전산보고 수행을 위한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설치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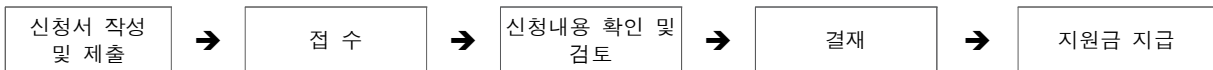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최초 지급요청서에 한함)
2. 대표자 명의(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가능) 입금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